

2013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3분기 선정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창업기업의 경영 조기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3분기 선정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2013년 중소기업 컨설팅사업 추진체계 >

TRACK	구 분	지원 대상	비 고
1. 건강진단 연계형 (진단 → 처방 → 치유연계)	공정혁신 컨설팅	업력·업종 제한 없음	건강관리위원회 추천
2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공모 방식”
	창업 컨설팅	일반 창업기업(업력 5년미만)	“공모 방식”
	원스톱 창업지원	(예비)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연중 수시·신청
3.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업력 제한 없음·제조업 기술분야	“공모 방식”

- * (원스톱 창업지원) 창업 준비단계부터 완료까지의 필요한 컨설팅을 연계하여 (예비)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과 경영 조기안정화를 지원
- * (해외전문가 컨설팅) 선진국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첨단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컨설팅 지원

나. 사업예산 및 선정규모

-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 54억원, 약 380개사
- 수요자 선택형 : 71억원 ("지속성장" 45억, "창업" 14억, "원스톱 창업" 12억)
 - * 3분기 약 150개사(지속성장 100개사, 창업 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 수요 및 가용예산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 특화형(해외전문가) : 3억원, 약 20개사

다. 지원 조건

TRACK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총사업비 한도 없음)	과제 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 연장 허용, 1회)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창업 컨설팅	최대 13백만원 (총사업비 2천만원)		
	원스톱 창업지원	최대 8백만원	정부 65%, 기업 35%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총사업비 한도 없음)	과제 규모에 따라 30 ~ 50%	

라. 정부지원금 산출방식(공정혁신 컨설팅, 지속성장 컨설팅, 해외전문가)

총사업비	비율	최대 지원금액	산출방식
3천만원 이하	30~50%	15백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50%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22백만원	{ 15백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 × 35%) }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		27백만원	{ 22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 25%) }
7천만원 ~ 1억원 이하 (1억원 이상 포함)		30백만원	{ 27백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 × 10%) }

* 단, 수요자 선택형 내, "창업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은 정액, 정률 지원

마. 선정·평가

TRACK		선정 절차	평가방식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진단 → 추천서 발급 → <u>적합성 평가</u> → 선정·협약 현장평가 생략(Fast Track 운영) 	서면평가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 → <u>대면평가</u> → <u>현장평가</u> → 선정·협약 	발표평가 (PT)
	창업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 → <u>선정평가</u> → 선정·협약 	
	원스톱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 → <u>대면평가</u> → <u>현장평가</u> → 선정·협약 	온라인평가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 → <u>대면평가</u> → <u>현장평가</u> → 선정·협약 	발표평가 (PT)

2 분기별 신청·접수 과제

가. 수요자 선택형(지속성장 컨설팅, 창업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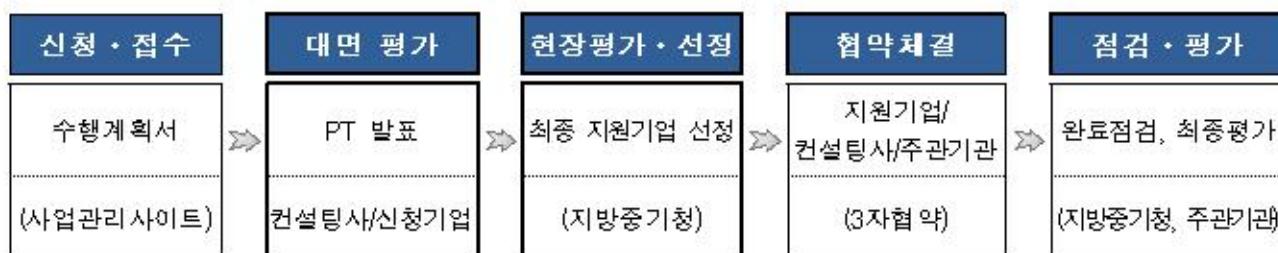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지속성장 컨설팅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기술 전 분야 (생신기술,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대응), 정보기술 등)
창업 컨설팅	업력 5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 조건

구 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지속성장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총사업비 한도 없음)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 연장 可, 1회)
창업 컨설팅	최대 13백만원 (총사업비 2천만원)	정부 65%, 기업 35%	

추진 절차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042-481-4523, 8909 (팩스) 042-472-3428	총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전화) 042-388-0322, 0323, 0324 (팩스) 02-6234-3107	주관기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전화) 02-6205-8121, 8123 (팩스) 02-568-0894	운영기관
콜센터		1661-1357	

* “수요자 선택형(지속성장 컨설팅, 창업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관리 시스템(www.smbacon.go.kr), 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3 연중 수시 신청·접수 과제

가.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컨설팅)

□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력·업종 제한 없음• 중소기업 건강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받은 기업 중 지역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기업	경영·기술 전 분야 (생산기술,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대응), 정보기술 등)

* '11년 6월 이후 건강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통해 지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처방전 유효기한이 사업신청일 이내인 경우도 포함

□ 지원 조건

구 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공정혁신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총사업비 한도 없음)	과제 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 연장可, 1회)

□ 추진 절차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042-481-4523, 8909 (팩스) 042-472-3428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전화) 02-769-6672, 6916 (팩스) 02-769-6919	주관기관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사업부	(전화) (02) 553-3808 (팩스) 02-553-3813	운영기관
콜센터		1661-1357	

*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관리시스템 (www.smbacon.go.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나. 수요자 선택형 (원스톱 창업지원)

□ 지원 대상

구 분	지원 대상	세부 요건
원스톱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재창업자 	<p>「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정한 창업자로서, 불임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p> <p>* 단, 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출진공 정책자금 선정기업)</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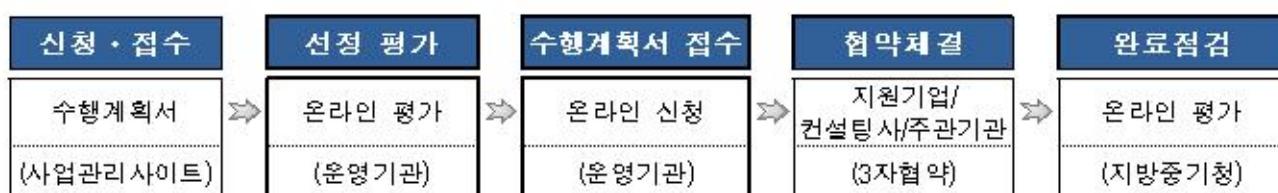
□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내용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자 • 재창업자 	4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분석,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등에 관한 타당성 분석 (경영전략, 마케팅, 생산·자금운용 계획 등)
창업절차 대행	창업법인설립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인사, 농어업법인 설립지도 * 단, 자본금 규모 10억 미만인 경우 100만원 지원
	법인전환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절차 지도
창업공장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자 • 재창업자 • 업력 7년 이내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공장설립(변경) 승인 등 * 단, 제조시설설치, 공장증설의 경우 200만원 지원

□ 지원 조건

구 分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원스톱 창업지원	최대 8백만원	정부 65%, 기업 35%	최대 6개월 (2개월 연장可, 1회)

□ 추진 절차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042-481-4523, 8909 (팩스) 042-472-3428	총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전화) 042-388-0322, 0323, 0324 (팩스) 02-6234-3107	주관기관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컨설팅지원팀	(전화) 042-256-1072, 1070 (팩스) 042-256-1071	운영기관
콜센터		1661-1357	

* “수요자 선택형(원스톱 창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 관리 시스템 (www.smbacon.go.kr), 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다. 특화형(해외전문가 컨설팅)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해외전문가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제한 없음 ▪ 제조업 기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핵심 기술 분야 (제품설계 및 해석, 신기술(제품)개발, 신공법도입, 원가 품질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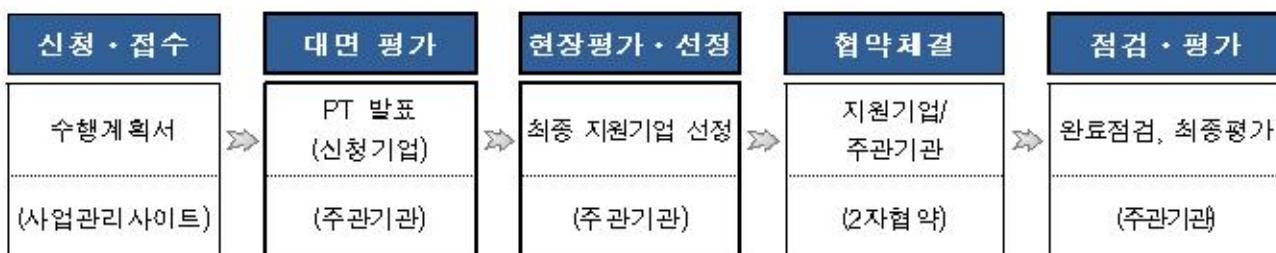
□ 지원 내용

구 分	지 원 内 용
자문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 3등급으로 구분되며, \$, ¥, €로 지급
항공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를 최대 2회 까지 지원하며, Economy Class 원칙
체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식비 : 4만원/일, 숙박비 : 13만원/박

□ 지원 조건

구 分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해외전문가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총사업비 한도 없음)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 연장可, 1회)

□ 추진 절차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042-481-4523, 8809 (팩스) 042-472-3428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전화) 02-769-6672, 6916 (팩스) 02-769-6919	주관기관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사업부	(전화) 02-553-3808 (팩스) 02-553-3813	운영기관
콜센터		1661-1357	

* “특화형(해외전문가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관리시스템 (www.smbacon.go.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3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록

가. 컨설팅기관 등록기준

- 상근컨설턴트 7명 이상을 보유하고, 5명 이상은 4등급 이상 충족하는 기관
 - * 상근직원 중 행정지원 인력은 불인정.
- 컨설팅 대학원 · 창업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터(중기청 지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 * 단,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수요자 선택형” 中, “원스톱 창업지원”만 수행 가능하나, 위의 등록기준(상근 7명, 5명 이상은 4등급 이상) 충족 시 타 분야의 컨설팅도 수행 가능

나. 컨설턴트 등록기준

- 컨설턴트 등록기준은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별표 3]에 따른다.
 - * 중기청 지정 컨설팅 대학원의 졸업자(학위취득시)의 경우 컨설턴트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원 재학중의 실무수습 기간은 경력(최대 1년)으로 인정한다.
 - * 단, “수요자 선택형” 中, “원스톱 창업지원”은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한 자도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해외전문가 등록기준

- 해당 국가 과학자 협회 또는 은퇴 기술자 협회에 등록된 자
(예 : 독일SES, 프랑스ECTI, 일본 키타큐슈 협회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록 해외전문가로서 2회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기타 해외전문가 등록기준은 해외전문가 등급 및 자격기준[별표 4]에 따른다.

라. 신청 및 등록방법 : 온라인(www.smbacon.go.kr) 신청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컨설팅 지원 분야별 운영기관에 신청

마. 신청 · 접수 기간 : 연중 수시신청·접수

바. 문의처 및 연락처

구 분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공정혁신 컨설팅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사업부	(전화) 02-553-3808	(팩스) 02-553-3813
해외전문가 컨설팅				
지속성장 컨설팅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전화) 02-6205-8121,8123	(팩스) 02-568-0894
창업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컨설팅지원팀	(전화) 042-256-1072	(팩스) 042-256-1071

4**기타 사항 (신청기간, 지원제외 및 가점)**

가. 3분기 신청·접수 : '13. 8. 8(목) ~ 9. 5(목) 18시 까지

지원 Track별 신청 · 접수 방법

TRACK		신청 · 접수 기간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연중 수시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u>분기별 신청 · 접수(2, 5, 8, 10월)</u>
	창업 컨설팅	* 예산 소진 시에는 별도 공지
	원스톱 창업지원	연중 수시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연중 수시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www.smbacon.go.kr)

다. 신청 및 지원제외, 가점부여 등

신청 사항 : 중소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당해년도 기준)

지원 제외

- [별표1]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 신청시 등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 “원스톱 창업지원(종전 창업대행 포함)”을 기지원 받은 동일 창업자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 ·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 화의 · 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우대 가점 : 각 2점, 최대 5점 부여

-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사회적기업, 싱글 PPM,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IMS인증, IP 컨설팅지원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PMS컨설팅 인증기업
- (가점 5점) 장애인 기업

라. 사업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비 고
'13. 8. 13(화), 14:00	대전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	비수도권 지역
'13. 8. 16(금), 14: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1층 중강당)	수도권 지역

*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코드	해 담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자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 ~ 854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731	수의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4	캠불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8911)은 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별표 2] 원스톱 창업지원 대상 업종

- 창업 절차대행(창업법인설립, 법인전환) 이외의 세부과제는 제조업에 한함.

코드	표준산업분류 업종	세부과제별 해당 업종	
		창업 절차대행	창업공장설립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작성)
A (1~3)	농업 임업 및 어업	●	
B (5~8)	광업	●	
C (10~33)	제조업	●	●
D (35, 3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E (37~39)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F (41, 42)	건설업	●	
G (45~47)	도매 및 소매업(지원제외) (단, 46 도매 및 상품증개업 지원)	○	
H (49~52)	운수업	●	
I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X	
J (58~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K (64~66)	금융 및 보험업 (단, 64 금융업은 지원제외)	○	
L (68,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단, 68 부동산업 지원제외)	○	
M (70~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1, 712, 7152, 7153 지원제외)	○	
N (74~7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O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X	
P (85)	교육 서비스업 (851~854 지원제외)	○	
Q (86,8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단, 86 보건업은 지원제외)	○	
R (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지원제외)	○	
S (94~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X	
T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X	
U (99)	국제 및 외국기관	X	

* ● : 모두 지원 / ○ : 일부지원 / X : 지원제외

[별표 3]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자격 및 경험기준	계(원)
특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1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7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15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21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985,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10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1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834,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9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757,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 	644,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 	518,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388,000

* 해당분야라 함은 사업 Track별 지원내용에 대한 컨설팅 분야를 말함

[별표 4] 해외전문가 등급 및 자격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USD	JPY	EUR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1,000 이하	90,000 이하	740 이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720 이하	65,000 이하	530 이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50 이하	50,000 이하	410 이하

* 해당분야라 할은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기술분야를 말함

** 기술자 자격증은 일본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별표 5] 2013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신청서

2013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공정혁신 <input type="checkbox"/> 수요자선택형 <input type="checkbox"/> 해외전문가			구분	(예비창업자)							
신청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역본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부분야	대분류/중분류											
컨설팅 주제												
컨설팅 기간	20 . . . ~ 20 . . . (개월)											
컨설팅 금액												
산출 금액	천 원	할인 금액	천 원	최종 금액	천 원							
정부 지원금	천 원 (%)		기업부담금	천 원 (%)								
투입명수	총 명		투입일수	총 일 (M/D)								
신청기업	기업명			설립(예정)일		yyyy-mm-dd						
	사업자등록번호 (예비창업자는 가동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평가장소			전화번호								
	주 소	본사 우(-)					전화번호					
		공장 우(-)					전화번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중분류)			업 태		1)	2)				
	주생산품	1) 2) 3)										
	재무 현황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원)	당기제품 제조원가 (원)	영업이익 (원)	당기 순이익 (원)	자산총계 (원)	부채총계 (원)	자본총계 (원)	유동비율 (%)		
		20										
홈페이지			종업원수(명)		(상시근로자수)							
우대사항 (각2점, 최대5점)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기술혁신형기업(TINNO-BIZ) <input type="checkbox"/> 수출유망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input type="checkbox"/>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IMS인증 <input type="checkbox"/> 싱글PPM <input type="checkbox"/> 농공상 <input type="checkbox"/> HACCP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기업(5점) <input type="checkbox"/> PMS컨설팅 <input type="checkbox"/> IP컨설팅 수행업체(특허청 시행) <input type="checkbox"/>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input type="checkbox"/> GMP									
총괄책임자 (신청기업)		성 명			휴대전화							
		직 위			e-mail							
		전 화			팩 스							
컨설팅 기관		기업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홈페이지				종업원수(명)		상근: 명 비상근: 명						
과제책임자 (컨설팅기관)		성 명			휴대전화							
						e-mail						
						팩 스						
컨설팅 기관		성명	상근여부	등급	M/D	성명	등급	M/D	성명	등급	M/D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신청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총괄책임자)의 메일링, SMS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대표자(또는 총괄책임자) : (직인) 컨설팅기관 대표자 : (직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별표 6]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

접수번호 :	진단관리번호 : -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			
<u>수신자 : ○○지역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u>			
진단기업에 대한 맞춤형 치유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강관리 처방전을 발급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업명	대표자(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	
소재지			
치유분야	치유과제(치유 사업)	지원기관	유효기한
자금			
보증			
R&D/정보화			
국내 마케팅			
국외 마케팅			
기술경영지원			
인력/연수			
사업전환/M&A			
개선권고			
불입 1. (기업명) 건강진단 결과 요약서 1부. 2. (기업명) 건강관리 처방내역 1부. 끝.			
20 년 월 일			
○○ 진단기관장(직인)			
주 소			
문서번호	-	팩스번호	
담당자(연락처)		진단자(연락처)	

[붙임 1] 진단보고서(Track I, II) 통일

진단관리번호 : -

(기업명) 건강진단 결과 요약서

① 진단기업 현황

기업명		설립일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표준산업분류				주생산품목	
* 최근 3년간 기업경영성과 요약					(단위 : 백만원)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산총액	자본총계
2010년					
2011년					
2012년					

② 건강진단 결과(S/W/O/T-S/R)

기술 및 산업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기회 [O]		강점 [S]	건전 [S]
위협 [T]		약점 [W]	위험 [R]

④ 기업성장 로드맵 및 개선방향

[붙임 2]

(기업명) 건강관리 처방내역

처방 1	자금	보증	R&D/ 정보화	국내 마케팅	국외 마케팅	기술경영 지원	인력/연수	사업전환/ M&A	개선 권고
치유 사유									
치유 내용									
처방 2	자금	보증	R&D/ 정보화	국내 마케팅	국외 마케팅	기술경영 지원	인력/연수	사업전환/ M&A	개선 권고
치유 사유									
치유 내용									